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2402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 2016. 11. 25.

판결 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523,924,469원 및 그 중 291,034,420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232,719,956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각 2016. 8. 2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는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72,318,843원 및 그 중 172,318,65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8. 2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E,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70,611,20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6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2007. 6. 12.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억 1,2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6. 12.부터 2012. 6. 11.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7. 6. 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07. 6. 12.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6. 12.부터 2008. 6. 11.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6. 6. 3.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08. 6. 26.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억 9,5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8. 6. 26.부터 2009. 6. 25.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6. 6. 17.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을, 2015. 2. 16.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억

5,2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5.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약정',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피고 C, D는 위 제1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2007. 6. 13.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2008. 6.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2015. 2. 17. 같은 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2. 22. 이자 및 원금 연체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11. 중소기업은행에 291,034,420원(= 제3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137,583,221원 + 제4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153,451,199원), 2016. 3. 30. 우리은행에 232,949,544원(= 제1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172,548,238원 + 제2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60,401,306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제4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169,900원이고, 원고가 제1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229,588원을 회수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93원이다. 그리고 2016. 3. 1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피고 C는 2015. 1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 F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924,469원[= 대위변제금

잔액 523,754,376원(= 중소기업은행 291,034,420원 + 우리은행 232,949,544원 - 회수금 229,588원) + 위약금 169,900원 + 확정손해금 193원] 및 그 중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291,034,420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인 2016. 3. 11.부터, 우리은행 대위변제금 잔액 232,719,956원(= 대위변제금 232,949,544원 - 회수금 229,588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인 2016. 3.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2.까지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72,318,843원[= 제1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잔액 172,318,650원(= 대위변제금 172,548,238원 - 회수금 229,588원) + 확정손해금 19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72,318,6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30.부터 위 2016. 8. 22.까지 위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 F(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2.항 기재 구상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제1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 C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6. 3. 30. 대위변제를 하여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1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피고 C의 보증책임 기간은 당초 신용보증기간인 2012. 6. 11.까지이므로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6. 3. 30. 발생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위 피고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피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일하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것이어서 위 피고의 퇴사일인 2015. 10. 13. 이후에는 언제든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회사에 재직하게 된 관계로 회사가 부담하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그 직책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약정이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원고가 개별적으로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갑 제1호증의 2 신용보증서에도 보증방법이 '개별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즉 피고 회사가 위 대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와 달리 제1약정이 근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대출채무의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그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위 피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에게는 시가 합계 약 95,609,440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172,318,843원의 보증채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1억 8,057만 원의 보증채무, 동천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5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등이 있어 피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친을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C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들이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7.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5. 10. 22.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2015. 11. 11. 다시 자신의 여동생들인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 C와 피고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채무의 발생이 예상되자 그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H 내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C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천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12.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2,5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인 무렵인 2016. 8. 26. 기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95,611,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금만으로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합계 70,611,200원(=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 95,611,2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500만 원)을 초과하는 172,318,84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C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70,611,200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70,6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윤상도

판사명선아

판사김기호

별지